"현대차의 구사대 폭력은 조직적 범죄행위다"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 보고회

■ **일시**: 2025년 7월 23일(수) 오후 4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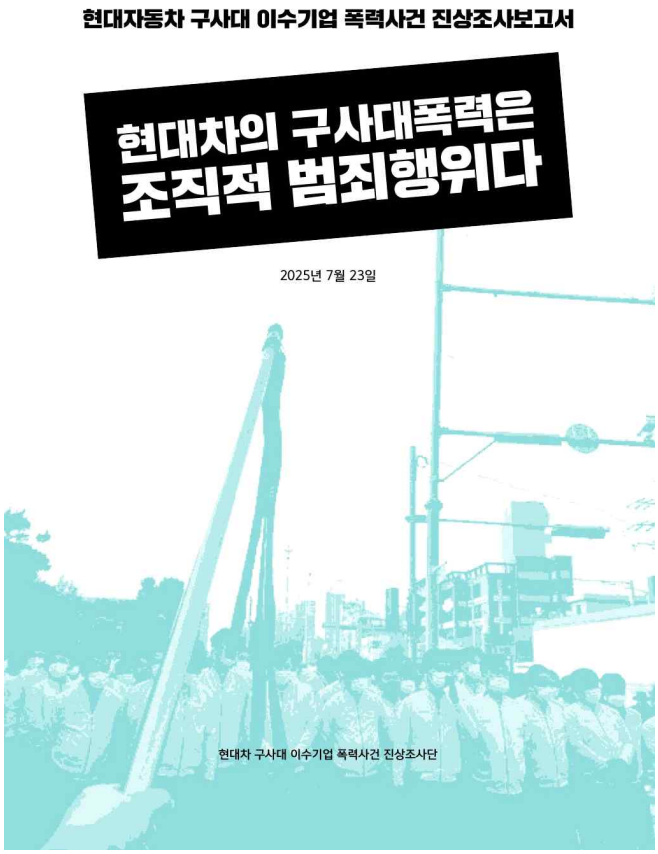

목 차

[인사말] ····· 4

[Ⅰ. 서론] ····· 16

[Ⅱ. 이수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현대차 구사대 폭력의 경과와 특징] ····· 19

[Ⅲ. 현대자동차의 구사대 이용 노무관리 문제] ····· 27

[Ⅳ. 현대차와 이수기업의 고용구조 문제] ····· 31

[Ⅴ. 폭력에 공조한 경찰, 파괴된 집회의 권리] ····· 34

[Ⅵ. 결론: 현대자동차의 구사대 폭력은 조직적이고 비인도적인 노무관리 전략] ···· 38

[Ⅶ. 진상조사단의 요구] ····· 41

[증언대회] ····· 43

진행 순서

“현대차의 구사대 폭력은 조직적 범죄행위다“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 보고회

- 일시: 2025년 7월 23일(수) 오후 4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공동주최: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공권력감시대응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백기완노나메기재단, 블랙리스트 ’이후’,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스튜디오 알, 영등포산업선교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국회의원 김주영, 김태선, 박정, 박정현, 박해철, 용혜인, 윤종오, 이용우, 이학영, 이해식, 정혜경

내용	발표
사회: 김상은(공동조사단장, 민변 노동위원회)	
보고서 발표	
[발표1] 이수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현대차 구사대 폭력의 경과와 특징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발표2] 현대자동차의 구사대 이용 노무관리 문제	이선민(민변 노동위원회)
[발표3] 현대차와 이수기업의 고용구조 문제	유태영(민변 노동위원회)
[발표4] 폭력에 공조한 경찰, 파괴된 집회의 권리	랑희(공권력감시대응팀)
[발표5] 진상조사단의 요구	김혜진(공동조사단장,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증언대회	
안미숙(이수기업 해고자), 윤혜민(연대시민)	

인 사 말

국회의원 김주영

안녕하십니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갑) 국회의원 김주영입니다.

먼저 이 뜻깊은 보고회를 준비해주신 주최·주관 단체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무엇보다 부당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용기 내어 싸우고 계신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현장에서 발생한 폭력은 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기업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는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기업과 권리와 책임이 보장되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특히 현대차가 불법파견 문제를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집단해고와 구사대 폭력을 동원한 일은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불법파견 노동자들은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야 하고, 부당한 해고는 즉시 멈춰야 합니다. 또한, 폭력을 행사한 이들은 책임을 져야하고, 이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기업 역시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오늘 보고회가 이 문제의 실상을 더 널리 알리고, 노동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일깨우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 이런 폭력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동이 존중받고, 누구나 안전하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모든 노동자들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 사 말

국회의원 박정현

안녕하십니까?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입니다.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현대차 이수기업 구사대 폭력 진상조사보고회>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구사대의 폭력에 피해를 당한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 올립니다.

지난 4월 18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에서 열린 '이수기업 200일 투쟁문화제' 집회 중, 현대차 구사대의 폭력 행위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와 연대 시민들이 상해를 입는 참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현대자동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을 발족하여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비롯한 인권·법률 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소속 활동가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기업 정리해고가 불법 파견 소송에 대한 보복과 불법 파견 은폐를 위한 탄압이라는 피해 노동자 분의 증언은, 이 사건이 단순히 우발적인 폭력이 아니라 기업의 비정규직 문제와 얽힌 구조적인 문제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상보고회를 통해 노동과 인권의 가치가 우리 사회에 더욱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길 기원합니다. 또한, 사건의 전말을 명명백백히 밝혀져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진상규명과 정의 실현을 위한 여러분의 노력에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인 사 말

국회의원 용혜인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입니다.

<현대차 이수기업 구사대 폭력사건 진상조사 보고회>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 헌신해주신 진상조사단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에서 벌어진 참담한 구사대 폭력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3월과 4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에서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과 연대시민들에게 자행된 폭력은 명백한 범죄였으며 우리 사회에서 노동의 가치가 얼마나 홀대받고 있는지 보여주는 참담한 사례였습니다. 또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을 지켜야할 경찰은 얼마나 무책임한지 깊이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지난 5월 15일 발족 이후, 피해 노동자들과 연대 시민들의 생생한 증언을 바탕으로 사건의 실체와 배경을 면밀히 조사해왔습니다. 이 보고서는 구사대 폭력의 경과와 현대차의 노무관리, 불법파견 구조, 경찰의 책임방기까지, 구조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보고서를 통해 이번 폭력이 연대의 확산을 차단하고 투쟁을 고립시키려는 조직적인 의도였음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저희 의원실도 경찰이 폭력을 방치한 정황을 확인하는 자료를 확보해 진상 규명에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었던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될 진상조사보고서가 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고 노동에 대한 한국 사회의 책임을 되묻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회에서도 이번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규명되고, 다시는 이러한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경찰이 집회 참여자들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누구도 폭력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상조사단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보고회가 사회적 정의 회복의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 사 말

국회의원 윤종오

반갑습니다. 진보당 원내대표 울산북구 윤종오 의원입니다. 우선 이 자리를 주최해주신 ‘현대자동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사건의 당사자로 피해자 증언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이수기업 해고자와 연대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구사대 폭력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저 역시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 현대자동차 현장에서 조합원으로 일하면서 구사대와 몸으로 부딪쳐야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시절 우리는 회사의 폭력적 통제에 맞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런데 2025년 현재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3일과 4월 18일, 현대자동차는 또다시 구사대를 동원해 폭력을 자행했습니다. 그 결과 3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특히 작고 왜소한 여성 조합원들과 연대 참가 여성들이 주된 폭력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폭력이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피해자들이 경찰들에게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외쳤지만 경찰은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채증만을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채증을 했음에도 지금까지 단 한 건의 고소 사건만을 진행하였으며, 그것조차 가해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가 사실상 멈춰 있습니다. 오히려 집회 주최자들에 대한 집시법 위반 등에 관한 소환조사가 먼저 이뤄졌습니다. 경찰이 처음부터 구사대의 폭력을 방치하고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공권력의 방조 속에 구사대는 노동자에게 폭력을 계속 행사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인권유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기업이 사적 폭력을 동원해도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만이

조사받는 현실이 계속된다면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정상적인 민주주의 사회라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반복되는 구사대 폭력의 실상을 고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됩니다.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현대자동차 현장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구사대 폭력의 근절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국회에서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 사 말

국회의원 이용우

안녕하십니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이용우입니다.

먼저 지난 3월과 4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폭력 사건으로 피해를 입으신 현대자동차 구사대 이수기업 해고 노동자 여러분과 연대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진상조사를 위해 지난 5월 15일 진상조사단을 발족하고, 2개월여에 걸쳐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하나의 폭력 사건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직시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의 공장 앞에서 조직적인 집단 폭력이 자행되었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폭력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현대자동차의 구조적인 노무관리 문제와 불법파견이라는 배경 속에서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기업이 정당한 노동자의 요구를 외면하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물리적 폭력을 방조하거나 묵인했다면 이는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공권력이 제 역할을 다했는지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공권력이 폭력을 방조하거나 수수방관했다면 그 책임 또한 분명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불법파견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폭력 사건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될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제도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노동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가 어떤 교훈을 얻고,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낼 것인가입니다. 폭력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없으며, 노사 간의 갈등은 반드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의 아픔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국회 또한 이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보고회가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라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 사 말

국회의원 이학영

안녕하십니까, 국회 부의장 이학영입니다.

노동자에 대한 폭력의 실체를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현대차 이수기업 구사대 폭력 진상조사보고회’ 개회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현대자동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사대라는 단어를 2025년 대한민국에서 다시 듣게 될 줄은 상상도 몰랐습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단체행동이 활성화되자, 군사독재 정권의 비호를 받은 재벌들은 이를 무력화하고 탄압하기 위해 폭력 수단으로 구사대를 동원했습니다.

구사대는 절대 ‘회사를 구하기 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재벌의 폭력을 대행하는 용역깡패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유린하는 파업파괴자입니다. 그러나 어두웠던 시대의 잔재인 구사대가, 2025년 현대자동차에서 다시 등장했습니다.

지난 3월과 4월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 앞에서 같은 복장을 한 500여 명이 노동자와 시민을 향해 집단폭행을 가했습니다. 노동자는 바닥에 내동댕이쳐지고, 끌려가고, 천막 농성장은 찢기고 무너졌습니다. 13명이 병원에 실려 갔고, 20명이 넘는 부상자들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었을 법한 일이,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현대자동차 1차 사내하청 이수기업의 노동자들은 20년 넘게 같은 공장에서 같은 일을 해온 분들입니다. 5년마다 하청업체는 바뀌었지만, 고용은 유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수기업은 5년을 채우지도 않고 갑작스레 폐업했고, 노동자들은 해고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은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받고 파기환송 재판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 문제는현대차가 반복되는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다면 해결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책임은 외면하고, 하청업체 폐업을 통해 노동자의 생계를 압박하고 불법파견의 증거까지 지우려 했습니다. 여기에 구사대까지 동원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은 명백히 선을 넘은 행위입니다. 의도된 조직적 폭력이자, 노골적인 보복입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을 덮기 위해 노동자를 거리로 내몰고, 폭력을 동원해 입을 막으려는 행위가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조 악마화와 탄압에 앞장섰던 윤석열 정부에서나 가능했던 일입니다. 노동자와 시민의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시대착오적 탄압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태의 중심에 있는 원청 현대자동차가 폭력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은 노조법 개정이 경영권 침해와 나아가 경제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만 할 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에서 보듯 하청업체 뒤에 숨어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그 책임을 회피·외면해온 행태가 노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로 이어졌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가 다시는 짓밟히지 않도록 국회가 앞장서겠습니다. 폭력과 불법이 통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 사 말

국회의원 이해식

안녕하십니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 강동을 국회의원 이해식입니다.

2025년 3월과 4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고에 맞서 생존을 외치던 노동자들에게, 연대의 손을 내민 시민들에게, ‘보안’이라는 이름의 폭력이 자행됐습니다. 수백 명의 구사대가 천막을 강탈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여성과 시민을 넘어뜨렸습니다. 경찰은 이를 막기는커녕 방관했고, 때로는 연행하며 생존권을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쓰러졌던 이들이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진실을 증언했고, 조사단은 그 목소리를 귀 기울여 기록했습니다. 오늘 발표될 진상조사보고서는 단지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 노동인권과 공권력의 작동 방식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고용승계 약속을 저버린 구조적 갑질, 폭력으로 집회를 제압한 노무관리 방식, 이를 사실상 용인한 공권력. 이 모두가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수기업 해고노동자들께서는 “우리의 싸움이 잊히지 않았다는 것, 그 자체가 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희망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진상조사단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피해자와 연대 시민 여러분께 존경과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며, 사람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길, 그 길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 사 말

국회의원 정혜경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충격적이고 경악할 현대자동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7~80년대 군사독재 시절, 노동자를 때려잡던 악명높은 '구사대'의 망령이 되살아났습니다. 말이 좋아 '구사대'지, 정확히는 사업주가 돈을 주고 고용한 깡패폭력집단입니다. 이들은 노동자들에게 '묻지마 폭행'을 무자비하게 행사하고, 산업현장을 무법천지·소요사태로 몰아가곤 했습니다.

특히 현대자동차의 구사대 폭력은 뿌리깊습니다. 2003년 '식칼테러'부터, '스타렉스 납치테러'등 살벌한 만행은 물론 일상적으로 감시·사찰·차별·폭력이 20년 넘도록 끊이질 않았습니다. 지난 3월, 4월에도 해고노동자들의 집회에 난입한 구사대는 천막을 탈취했고, 노동자·시민을 마구잡이로 짓밟아 늑골·갈비뼈·손가락이 부러지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투입한 계엄군조차 시민에 대한 폭력을 자제한 것에 비하면, 구사대는 그야말로 막돼먹었습니다. 가장 원초적인 형태로 노조를 공격하는 '자본이 만든 괴물'입니다.

현대차는 즉각 구사대를 해체하고, 폭력사태에 모든 책임을 지십시오. 구사대는 민주주의 국가에 존재해서는 안 될 청산의 대상입니다. 또한 사태 악화의 책임은 폭력사태를 방관한 경찰에게도 있습니다. 책임자를 문책하고, 현대차 사업주 및 관계자 모두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아울러 이수기업 노동자들의 정당한 고용승계를 즉각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21세기 대명천지에 '구사대'라는 독재망령은 완전히 사라져야 합니다. 함께 모색하고, 함께 투쟁하고, 함께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Ⅰ. 서 론

Ⅰ. 서론

1. 조사 배경

현대자동차 주식회사가 2025년 3월과 4월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개최된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의 집회에 대하여 보안운영팀 소속 직원들을 동원하여 집회참가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집회물품인 천막을 강탈하여 집회를 무산시킨 사건이 발생했다.

이미 2004년 ‘현대자동차 노동자사찰·비정규직노조탄압 진상조사’, 2011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탈퇴강요·인권침해 진상조사’가 있었음에도 반복되는, 현대차의 구사대를 동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로부터 현대차의 초법적인 폭력행위를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인권활동가들과 변호사들이 당해 사건의 배경, 현대차 비정규직 운영실태 등 고용구조, 구사대를 활용한 노무관리의 문제점, 구사대의 폭력행위에 대한 공권력의 묵인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2. 진상조사단 구성 및 활동

가. 구성

2025년 5월 15일 공권력감시대응팀, 백기완노나메기재단, 블랙리스트 이후,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스튜디오 알, 영등포산업선교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3월 13~14일, 4월 18~19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이하, ‘이 사건 폭력사태’라 함)에 대하여 ‘현대자동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을 발족하였다.

나. 활동

1) 회의

회차	일시 및 장소	참석자	개요
1차	2025. 5. 14. 민변	위원 15명	진상조사 방향 및 계획 수립
2차	2025. 5. 23. 민변	위원 13명	팀별 조사, 인터뷰 계획 수립
3차	2025. 5. 29. 온라인	위원 16명	의원실 답변, 인터뷰 질문지 검토
4차	2025. 6. 5. 덕수	위원 17명	인터뷰 공유, 집필 계획 수립
5차	2025. 6. 13. 민변	위원 14명	조사보고서 목차 검토, 후속 활동 계획 수립

6차	2025. 6. 25. 민변	위원 13명	조사보고서 초안 검토
7차	2025. 7. 2. 민변	위원 12명	조사보고서 수정안 검토
8차	2025. 7. 14. 온라인	위원 13명	조사보고서 최종안 검토

2) 현장조사

아래 일시에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 앞을 방문하여 집회신고 장소, 구사대 배치 및 집회장소 침입경로 등을 확인하였고, 집회참가자 등으로부터 이 사건 폭력사태 당시 피해상황을 청취하였다.

회차	일시 및 장소	참석자	개요
1차	2025. 5. 30.	위원 4명	이수기업 당사자 및 지역 연대자 인터뷰, 집회 현장 답사
2차	2025. 5. 31.	위원 7명	

3. 조사방법

가. 서면조사

이 사건 폭력사태와 관련하여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국회의원을 통해 경찰운용 및 집회신고 현황, 현대차 울산공장 보안인력 운영실태 자료를 확보하여 조사하였다.

순번	서류명	작성자	자료제공
1	최근 울산지역 경찰운용 관련자료	울산광역시 경찰청	용혜인 국회의원
2	집회 상세내역(24.5-25.4) 및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주변 집회신고서	울산광역시 경찰청	용혜인 국회의원
3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보안인력 운영실태 관련자료	현대차	정혜경 국회의원

나. 영상/사진 조사

스튜디오 알, 이수기업 해고자 안미숙의 영상, 김소연, 변주현, 베라, 신소요, 예주, 트위터(현 'X') 등의 사진을 조사하여 이 사건 폭력사태 당시 구사대의 집회방해 및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폭행 장면, 경력의 배치 현황 및 이 사건 폭력사태 당시 경찰의 태도를 확인하였다.

다. 대면조사

아래 일시에 집회참가자 및 피해자에 대한 대면조사를 통해 이 사건 폭력사태 경과, 피해현황 및 현대차 구사대 운영 현황을 확인하였다.

	이름	날짜	조합/연대자	비고
1~3	조00, 안00, 박00	5/30	연대자	울산지역 노조운동가, 과거 현대차 구사대 폭력 피해자

4	강진관	5/30	연대자	
5	김현제	5/30	연대자	현대차 비정규직, 과거 현대차 구사대 폭력 피해자
6	김기호	5/30	연대자	
7	심연진	5/30	연대자	
8	윤혜민	5/30	연대자	
9	이도한	5/31	연대자	
10	변주현	5/31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조합원	부상자
11	신소요(활동명)	5/31	연대자	
12	이종명	5/31	이수기업 해고자	
13	김현규	5/31	이수기업 해고자	
14	유선근	5/31	이수기업 해고자	
15	장진형	5/31	이수기업 해고자	
16	안미숙	5/31	이수기업 해고자	
17	권하은	6/10	연대자	부상자
18	베라(활동명)	6/10	연대자	부상자
19	박수연	6/10	연대자	3월 13일, 4월 18일 집회 참여
20	김소연	6/11	연대자	부상자, 갈비뼈 다침. 비정규직 노조활동 경험자
21	김주휘	6/15	연대자	부상자, 음식연대하는 시민
22	권수정	5/28	참고인	현대차 비정규직 출신, 과거 현대차 구사대 폭력 피해자
23	김00(가명)	5/30	참고인	경비대
24	조성수	5/30	참고인	경비대, 현대차 비정규직 출신

※ 2025. 6. 28. 현대차에 이 사건 당일 보안운영팀 운영과 관련하여, 울산북부경찰서에 이 사건 당일 경력 운영과 관련하여 각 조사협조를 요청했으나, 2025. 7. 중순 현재 무응답함.

Ⅱ. 이수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현대차 구사대[1] 폭력의 경과와 특징

2025년 3월 13일과 14일(1박 2일), 4월 18일과 19일(1박 2일) 두 차례에 걸쳐, 현대자동차 하청 기업인 이수기업에서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연대자들에게 현대자동차 보안운영팀 소속 직원들(구사대)가 울산 공장 정문 앞에서 폭력을 가하는 일이 연이어 벌어졌다.

1. 사건의 경과

2024년 9월 현대차 협력업체인 이수기업은 업체를 폐업하고 노동자 34명 전원을 해고했다. 현대차는 2003년 이후 정규직노조와 맺은 '협약서'에 따라 협력업체가 폐업하더라도 소속 노동자의 근속을 인정하고 고용을 승계해왔다. 하지만 현대차는 이수기업을 폐업하면서 그 관행을 깨고 노동자들을 해고한 것이다.

이수기업 해고노동자들은 2025년 3월 13일에 투쟁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공장 앞에 천막을 설치하려고 한다. 현대차 보안운영팀(구사대)이 이를 막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물리적 폭력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집회 중 천막 설치 여부는 현대차 보안운영팀의 업무가 될 수 없다. 구사대가 천막을 빼앗고 노동자들과 연대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폭력이고 실정법 위반이다. 집시법과 폭력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임에도 이미 배치된 경찰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사전조치도 사후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가. 3월 13일~14일 구사대 폭력 경과

○ 3월 13일 천막강탈

- 16시 이수기업 노동자들 집회 시작
- 16시 40분경 집회 마무리 경 노동자들이 천막을 꺼내자, 갑자기 본관 입구에서 대기하던 현대차 구사대 200-300여명이 집단적으로 달려들어 천막을 찢고 무너뜨림.
- 16시 41분경 구사대가 천막을 강탈한 후 천막을 포터에 싣고 감. 구사대는 천막을 탈취하기 위해 카메라를 든 사람과 조합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
- 16시 42분경 구사대 본관 정문 입구로 빠져나감.
  집회참가자들 정문으로 이동.
- 17시 00분경 집회참가자들 본관 입구에서 천막 회수 및 사과 요구하며 항의 행동
- 18시 천막을 돌려줄 때까지 농성, 해복투 사무실에서 바닥 매트를 가져옴.

1) 이하 조사결과에 의하면 사건 당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집회참가자들에게 폭행을 행사하고, 천막을 강취한 자들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울산비지니스지원실 산하 보안운영팀 정규직 및 계약직 직원들로 파악된다. 이후 조사보고서의 서술에서는 이들의 현대자동차 내의 조직편제와 관련해서는 보안운영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당일 이들이 비정규직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집회를 방해한 행위를 서술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구사대(노동운동을 방해하거나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하여 회사 측에서 동원한 조직이나 집단)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구사대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장에서 다룬다.

○ 3월 14일 노숙농성 중 새벽 구사대 폭행과 경찰의 연행
- 노숙농성 진행하며 새벽2-3시까지 집회 이어감. 현대차에서 노래 틀어 집회를 방해
- 05시 00분경 집회참가자들 본관 입구에서 출근 피켓 선전전
- 05시 30분경 구사대가 피켓 선전전 중인 조합원 밀치고 집기를 던지거나 찢음.
  구사대가 폭력으로 대오에 밀고 들어옴.
- 07시 15분경 집회참가자들 본관 입구에서 약식 집회
- 10시 00분경 현대차 구사대 폭력규탄 기자회견

나. 4월 18일~19일 해고 200일 문화제 당시 구사대 폭력 경과

○ 4월 18일, 200일 문화제 중 천막 탈취와 구사대 폭력
- 오전 8시 현대차, 인도에 화단을 설치. 경찰, 차도 사용 불허
- 15시 15분 오픈마이크 시작, 집회 시작 전부터 집회 앞뒤로 구사대 배치
- 15시 37분 투쟁문화제 시작과 동시에 천막 설치
  구사대 500명 몰려와 2~3분 만에 천막 강탈하고 **1차 폭력 행사**
  집회 장소인 인도 쪽에 천막을 설치하려고 하자, 한 명의 구사대가 담과 화단을 넘어 집회 현장으로 몸을 날려 난입해 천막을 덮쳤고, 이후 대기하던 구사대가 집회 앞뒤로 밀고 들어와서 다수 참가자 압사 위험
- 15시 39분 119에 전화, 부상자 병원 이송.
- 15시 49분 대오 재정비 후 투쟁문화제 재시작
- 18시 서울에서 온 연대버스 서울로 출발
- 18시 15분 문화제 종료. 집회참가자들 휴식을 취하거나 돌아가면서 저녁 식사
  구사대가 **앰프로 실랑이를 하며 2차 폭력 행사, 참가자들의 머리를 뒤에서 잡고 바닥으로 내동댕치 침, 부상자들 병원 후송**

○ 4월 19일, 선전전 준비 중 2차 구사대 폭력과 경찰의 연행
- 00시 현장노동자들 퇴근 시간에 맞춰 선전전 위해 현수막 펼침
  경찰이 집회신고 범위 이탈이라고 주장
  구사대 경비팀장 지시로 현수막 강탈 후 3차 폭력 행사
- 01시 항의하다 피켓이 경찰이 닿았다며 경찰 폭행 이유로 1명의 집회참가자 연행
- 01시 30분경 경찰 연행을 저지하기 위해 집회참가자들 연좌
  경찰차가 오고 해산방송
- 02시 7분 경찰 기동대 출동. 경찰은 방송차로 미란다 원칙 고지
- 02시 17분 여경 투입하여 연좌하던 집회 참가자들 강제 해산, 여경 부족하여 남경이 참가들을 끌어당기기도 함.
  연행자 이송에 항의하던 집회참가자 2명 추가 연행

2. 피해 상황

구사대 폭력의 대상은 조합원이건 비조합원이건, 성별이건 가리지 않았다. 심지어 천막철거를 한 이후에도 폭력을 계속 이어가 부상자가 많았다. 부상자가 있음에도 구사대건 경찰이건 치료나

응급차를 부르는 등의 조치도 하지 않았다. 집회참가자들이 상처를 치료하거나 응급차를 불렀다.

가. 4월 18일 현대차 구사대 폭력으로 인한 부상자 현황

노골적인 구사대 폭력으로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이 12명,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한 이들이 20명에 이르렀다. 수술을 한 사람이 3명, 갈비뼈가 부러진 사람 3명, 뇌진탕인 사람인 3명, 그 외에도 구사대가 몰려와 압박을 해 호흡곤란과 명치 타박상을 입은 사람, 사람을 뒤에서 잡아끌어 넘어서 손과 다리가 다친 사람 등이 12명이 된다.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것은 생계와 직장 일로 병원에 가지 않았지만 다친 사람은 집계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나. 폭력에 대한 피해자들의 증언

1) 당일의 폭력 상황

“구사대가 머리카락을 잡아당겨서 … 아마 힘이 부족해서인지 뒤쪽으로 머리를 박았어요. … 보도블록에 머리를 박았었고. … 바닥에 제가 놀라서 소리를 계속 질렀어요.” (베라 인터뷰)

3월 15일과 4월 18일 집회 모두 참석했던 이들은 두 날의 폭력 양상이 달랐다고 증언한다. 4월 18일의 폭력은 매우 심각한 폭력이었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이었다고 말한다. 4월 18일의 폭력이 이전과 다른 것은 이수기업 해고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연대하러 온 시민들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인 폭력이 자행되었다는 점이다.

2) 폭력에 의한 트라우마

현대차 사내하청 이수기업 해고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한 이들 중에서는 체구가 작은 여성이 다수 있었고, 위 2건의 구사대 폭력 사건에서 큰 부상을 당하였다. 이로 인해 신체적인 피해외에도 불안, 불면, 무기력 등의 심리적인 고통을 심각하게 호소하고 있다.

3. 이수기업 해고노동자 투쟁에 대한 현대차 구사대 폭력의 특징

가. 기획된 폭력

1) 의도적으로 충돌하고 폭력 상황을 만들려는 시도

4월 18일에는 집회를 시작하기 전부터 전보다 많은 500여 명의 구사대를 위력을 과시하듯 집회 대오 앞과 뒤에 배치한 상태였다. 구사대들은 천막이 등장하기 전부터 장갑을 끼고 동일한 옷을 입고 있어서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런데 경찰들은 집회 대오 앞뒤로 구사대가 위협적 분위기를 만들고 있음에도 경찰통제선으로 분리하는 등 폭력을 예방하려는 조치를 일절 하지 않았다. 근접한 장소에서 서로 다른 주장의 집회신고를 할 경우 물리적 충돌이나 집회 방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것과 달랐다.

4월 18일, 구사대는 천막 탈취에만 그치지 않았다. 본 집회가 끝나고 타 지역에서 온 연대자들이 버스를 타고 귀가해 사람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도 현대차는 구사대를 완전히 철수시키지 않았다. 구사대는 지속적으로 앰프 방향에 대해 시비를 걸거나 현수막을 빼앗으며 집회참가자들을 자극하고 충돌과 폭력을 야기했다. 집회참가자들은 시비를 걸어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렇게 강도 높은 폭력을 지속할 수 있었던 배경은 경찰이 구사대가 폭력을 행사해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경찰은 상황이 마무리된 후에 나타났다. 그리고 한 일은 사진 채증뿐이었다. 그러나 사진 채증의 방향도 구사대가 아니라 집회대오를 향해 있었다. 사람들이 넘어져 깔리고 있어 인적 피해가 더 심각한 사태로 갈 것이같은 위험을 막고자 연대자가 경찰에 말려달라고 호소했음에도 눈앞에 보이는 폭력을 제재하지 않았다.

2) 연대의 확산을 막고 이수기업 노동자들을 고립・위축시키려는 의도

이수기업 해고자 투쟁은 초반에는 공장 안, 울산지역 안에서 이루어지다가 2025년 2월 울산지역 2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정당으로 이루어진 ‘이수기업 정리해고 철회 및 고용승계를 위한 울산지역대책위원회’가 구성하며 4월 18일 이수기업 200일 투쟁문화제는 전국적인 집회로 준비하던 시기다. 이에 현대차는 이러한 연대의 확산을 막아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연대자들을 폭력으로 위협해 다시 연대할 수 없도록 공포감을 심어주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연대자들이 들고 있는 깃발을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는데도 깃발을 부러뜨려서 연대자들을 자극했다. 구사대가 “중량(몸무게)이나 인원이 훨씬 많은데 깃발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밀면 되는데 굳이 깃발을 뺏는다” 행위를 한 목적이 다른 곳에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기획된 폭력은, 현대차 불법파견[2] 투쟁의 막바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힘으로 누르고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나. 여성/퀴어에 대한 강도 높은 공격

4월 18일 집회에는 여성으로 보이거나 체구가 작은 연대자들이 많았다. 구사대들에 비해 체구가 작아 물리적 충격이 클 수밖에 없고, 구사대가 전원 남성으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신체적 접촉으로 인한 성추행 가능성이 많았음에도 이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은 듯 폭력은 전방위적이고 강도 높게 행사됐다. 이로 인해 참가자 다수가 큰 부상을 입었다.

1) 구사대 폭력 수행의 젠더성

이들이 머리 긴 여성들의 머리채를 잡았다는 것 자체는 상대가 여성으로 인지했고, 여성들을 제압하기 쉬운 방식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이다. 참가자들은 “그냥 만만해 보이는 젊어 보이

2) 현대차 불법파견 투쟁과 이수기업의 해고에 대해서는 이 보고서의 4장에서 다룬다.

는 여자, 여자로 보이는 젊은 사람을 노렸을 거”라고 느끼기도 했다. 그래서 참가자들은 “제가 체격이 작고 왜소하니까 빼주려고 그래서 잡았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잡고 비트는 거”이거나, 앞뒤로 눌려 중단을 요구했지만 구사대들의 폭력은 멈추지 않았다. 이태원참사 같은 압사 사태가 떠오르는 공포를 느껴야 했다.

4월 18일 구사대의 폭력은 노골적으로 연대자들을 노린 것은 분명해 보인다. 3월 13일에도 여성연대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직접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공격으로 볼 때, 남성으로 이루어진 구사대가 여성혐오를 물리적 폭력에 동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직접적으로 상부에서 어떤 지시를 했건, 안 했건 폭력 행사를 하는 구사대 남성들이 연대하는 여성/퀴어에 대한 적대의식이나 소수자 혐오정서가 작동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여성/퀴어 연대자들에 대해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찰

이러한 폭력이 가능했던 이유는 경찰이라는 공권력이 자신들에게 우호적일 것이라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여성경찰이 소수 오기는 했으나, 남성으로 이루어진 경찰의 젠더적 특성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경찰은 집회를 방해하며 폭력행사를 하고 있는 가해자를 제지하는 것이 아니라 연대자들을 진정시키려는 방식으로 방조했다.

경찰은 여성퀴어 연대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여경들을 부르라는 집회참가자들의 요구도 경찰은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다. 이로 인해 여성 퀴어들은 남성경찰들과 몸을 부대껴야 하는 폭력까지 받아야 했다.

다. 오래된 구사대의 탈법적 상태와 무감각해지는 폭력

1) 오랜 시간 익숙해진 현대자동차 공장 내 탈법적 상태

노조간부 사찰과 구사대를 이용한 폭력, 회유를 통한 노조의 지배・개입 등 현대차의 위법행위는 오랜 시간에 걸쳐 예리하고 은밀하게 진화되어왔다. 2004년 <현대차 노동자사찰・비정규직노조탄압 진상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삼성SDI의 노동자 위치추적뿐 아니라 2000년 기아차「비정규직 노조 설립 관련 관리방안」, 캐리어사내하청 블랙리스트 등 IMF 이후 신자유주의에 발맞추어 대기업들은 사찰 등의 방식으로 노조를 탄압・감시해왔고, 현대차 울산공장 역시 「비정규직 비상시 대응조직도」 등 내부 사찰 문건이 폭로되면서 조직적 노조파괴행위가 진행되고 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3)]

위 진상조사보고서가 발표된 후 8년이 흐르는 동안, 현대차의 노조파괴 수법은 사적 영역에까지 확대되었다. 구사대에 의한 무차별적 폭행, 노조 파괴 행위에 대해 울산공장이 주목받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 이번 조사를 포함해 총 3차례의 조사에 참여했던 활동가는 “불법파견・정규직화 투쟁에 가려져 비정규직이 당장 처한 투쟁 상황이 주목되지 못했고, 구사대로부터 어떤 폭행을 당했는지 물어봐주는 이가 없었다.”(이도한 인터뷰)고 답한다. 그만큼 노동자들이 당하는 폭력

3) 2004년 <현대자동차 노동자사찰・비정규직 노조탄압 진상조사보고서> 참조

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울산공장에서도 2010년 파업 시기 납치되어 폭력을 당하는 등 개인들의 폭력 경험은 매우 심각한 것이었다.

2) 무뎌진 폭력

이수기업 사태에 참여한 상당수는 '3·4월 투쟁은 그래도 2012-2016년까지의 폭력에 비하면 별것이 아니다.' 라고 평가한다.(강진관 인터뷰) 수요집회[4]마다 항상 들려나갔고, 구사대에 갈비뼈가 부러져도 다시 현장에 합류하여 투쟁해야 했다.현대차 비정규직, 불법파견 투쟁에 수년간 참여하고 있는 이들은 감시와 사찰, 물리적 폭력, 일상에서의 차별 등으로 유발된 트라우마가 존재하고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10년 전 열사광장에서 매타작 당했던 한 노동자는, 너무 억울한 것은 정규직 지부가 집회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는 것이었다고 한다. 현대차는 단체행동권의 행사조차도 정규직과 비정규직를 구별하여 노골적으로 차별함으로써 전형적인 수법으로 노동자를 갈라치기 했다.

3) 일상화된 감시와 사찰

노동조합 집행부와 주요 활동가에 대한 사찰과 감시는 매우 체계적이었고, 일상적이었다. 각 구사대의 '내부조' 마다 차량이 수 대씩 배정되었으며, 감시 대상이 화장실에 가는 것, 화장실에 가서 어떤 행위를 하는지에 대해서까지도 매우 상세하게 일거수일투족이 어딘가에게 보고되었다. 그들의 집 앞에 찾아가 지속적인 감시 사찰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노동자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관찰하는 방법 역시 고효율, 저비용의 방법으로 진화해왔다. 현재 공장 여러 곳을 비추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특히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해고자 복직투쟁위의 사무실을 24시간 비추는 CCTV도 존재하며 문화제 등을 하는 경우, 공장 주변 아파트 옥상에 올라 그들을 촬영한다.

4) 죄의식 없는 구사대와 관리직

현대차 경비대원의 인터뷰에 의하면 촉탁직 경비대가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경우, 정규직 채용이나 금전적 포상이 주어지고, 문제가 생겨도 현대차가 법무팀 등을 통해 법적인 책임을 분담해주기 때문에 구사대들은 인간적 양심에 눈을 감게 된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폭행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그리고 그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게 되면 죄의식이 점차로 무뎌진다.

라. 치외법권 지대가 된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 앞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앞은 회사의 사유지가 아니다. 노동자, 지역 주민, 일반 시민이 자유

4) 2010년 7월 22일 대법원에서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판결이 난 이후 현대차비정규직지회에서 수요일 저녁마다 진행했던 집회이다. 그런데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화하라"고 요구하며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 천의봉씨가 2012년 10월부터 2013년 8월까지 296일의 철탑농성을 벌인 후, 사측은 노동자들이 수요집회를 할 때 구사대를 동원하여 폭력을 행사했고 그 폭력은 2016년 3월 현대차비정규직지회(울산공장)가 특별채용에 합의할 때까지 매주 지속되었다고 한다.

롭게 통행하는 공공의 공간이다. 또한 노동자의 집회, 시위, 발언이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장소이다. 지난 3월과 4월, 이곳은 치외법권 지대로 전락했다.

1) 구사대와 경찰의 공모로 만들어진 ‘고립된 폭력지대’

현대차 앞 정문앞은 현대차에게 시설관리를 위한 배타적 권한이 존재하는 사유지나 통제구역이 아니고 사전에 적법하게 신고된 장소에서 집회가 진행되었음에도 구사대는 500명가량의 인력을 동원하여 둘러싸서 봉쇄하고, 천막을 찢고, 강탈하고, 현수막을 강탈했으며, 깃대를 부러뜨리고, 폭력행위를 자행하였다. 여기에 경찰이 물리력 행사에 개입하거나 폭력을 제지하지 않음으로써, 즉 공권력과 사적 폭력의 공모는 정문 앞 공간을 치외법권 지대로 만들었다.

2)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앞 공간의 상징성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니라, 노동자가 현대자동차 내부를 향하여 경고를 전달하는 통로이자, 현대자동차 외부로 연대의 메시지를 전하는 공간적인 의미,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정문 앞 공간을 구사대는 물리적으로 봉쇄하고, 폭력행위를 자행함으로써,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폭력의 상흔을 남긴 장소가 되었다.

현대자동차는 누구나 다니는 정문을 통제함으로써 여론과 사회적 감시를 차단하고자 하였다. 사기업의 불법적인 노무관리와 공권력의 방기가 결합되어 공공의 공간이 인권침해의 사각지대로 변질되었다.

4. 경찰 수사 경과

가. 구사대들의 폭행 및 상해 및 집회방해죄 관련 수사

현대차 구사대들은 두 번에 걸친 폭력으로 32명에게 상해를 입혔고, 두 차례 거쳐 천막을 강취했을 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신고된 평화로은 집회를 방해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위 범죄상황을 직접 목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증 카메라를 이용하여 모두 촬영하였고, 울산북구청이 관리하는 방범용 CCTV에는 증거영상이 보존되어 있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 중 1인(고소사건 진행 중)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사건은 고소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입건조차 하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과 실무상 이 사건의 경우 관할경찰서인 울산북구경찰서가 사건 당일 현대차 구사대들의 범행장면에 대한 직접 목격 및 채증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였으므로 수사를 개시하기에 충분함에도 피해자 고소의 부존재를 이유로 수사개시에 관한 형사소송법상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반면에 이와 대조적으로 울산북부경찰서는 2025년 3월 13일 집회 과정에서 천막 강탈에 항의하면서 정문 앞에서 2025년 3월 14일까지 아침까지 항의집회를 이어간 것과 관련하여 신고범위를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집회주최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실시하였다.공정성을 상실한 편파적인 수사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한편 2025년 4월 18일 200일 문화제 참가자 1인이 구사대에 의한 피해사실(상해)을 신고하였고, 같은 날 01시~03시경 울산북부경찰서에 고소하였다. 피해자 진술조서(변주현)의 기재에 따르면 조사관은 피해자가 폭행한 사람이 현대차 경비원이라고 진술하자 폭행한 사람들이 현대자동차 경비원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나고 질문할 뿐 더 이상 구체적으로 피의자 특정과 관련된 질문을 하지 않았다. 영상에 촬영된 사람이 많아 구체적으로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사를 진척시키고 있지 않다.

그러나 사건 당일 현장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자들이 현대차 보안운영팀 소속이라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고, 그렇다면 경찰은 현대차 울산공장에게 현대차 보안운영팀 소속 직원들의 인상착의를 특정할 수 있는 인사카드 등을 임의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불응시 관련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하여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의무를 해태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한편 울산지방법원은 증거보전신청에 대해서도 기각결정을 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25. 6. 10.자 2025카기5288 결정 참조)[5].

나. 천막 강취에 대한 수사

울산북부경찰서는 사건발생 한 달 이상 지난 2025년 5월 22일 집회 주최자 안미숙에게 ‘천막 손괴’와 관련한 수사를 하겠다고 연락을 하였다. 폭행, 상해 등의 경우와 달리 피해자들의 고소가 없었음에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한 것이다.

피해자진술조서(의 기재에 따르면 울산북부경찰서는 2025년 3월 13일과 2025년 4월 18일 집회 물품 관련 사건을 ‘재물손괴’로 칭하고 있다. 그러나 구사대들이 집회참가자들을 폭행 · 협박하여 집회주최자의 재물인 천막을 손괴하는 것을 넘어 강취했기 때문에 강도죄로 의율함이 마땅함에도 재물손괴로 사건을 축소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피해자 조사에서 안미숙은 ‘경비대장(보안운영팀장을 지칭함) 이호준’을 천막강취의 현장지휘자로 특정하였고 조사관도 말했듯이 이런 일을 지시하는 사람에 대해 예를 들어 사장이나 부사장, 실장 등 이러한 사람들이 지시를 하였을 것이라고 예상함에도 이호준의 사무실과 핸드폰 및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통하여 통화 내역과 메신저 내역 등을 파악하면 되는 일인데 아직까지 진척된 상황은 알기 어렵다.

---

5) ▲위 피해자가 울산북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증거보전 대상인 CCTV를 확보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위 CCTV 영상을 확보한 경우 위 피해자는 수사절차에서 자료를 열람·복사할 수 있다는 이유로

Ⅲ. 현대자동차의 구사대 이용 노무관리 문제

1.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이라는 계급

1998년 고용유연성이라는 이유로 탄생한 ‘비정규직’은, 또 하나의 계급이었다. 2003년 현대차 비정규직노동조합이 설립되고, 울산공장의 비정규직들은 2016년 현대차가 비정규직들에게 특별채용을 제안하기까지 매주 수요일 이른바, ‘수요집회’를 이어간다. 현대차는 “열사광장”에서 매주 진행되는 수요집회의 공간을 그들보다 2~3배 많은 구사대를 이용하여 침탈하였다. 그 당시 집회에 참여했던 이들은 매주 수요일은 ‘쳐맞는 날’이라고 별칭하면서도 수년간 수요집회를 이어왔다. 매주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때리는 자와 맞는 자가 정해진 형태로 수년간 행해진 폭력은, 구사대와 비정규직 모두를 폭력에 무뎌지게 만들었다.

2. 구사대 운영 실태

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보안운영팀의 조직 구성

2025년 3월 13~14일과 4월 18~19일에 폭력을 행사했던 구사대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울산비지니스지원실 산하 보안운영팀 정규직 및 계약직 직원들로 확인된다. 현대차 울산공장의 보안운영팀 조직은 ① 현대차 울산공장(원청)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보안운영팀 소속의 직원과 ② 촉탁직으로 채용된 직원, ③ 원청에서 직접 고용하지 않고 하청 등을 통해 고용된 이른바 ‘보안업체 직원’으로 구성되고, 정규직과 촉탁·계약직 직원의 수는 총 260여 명 정도이며, 외부 용역업체 소속 직원의 수는 120여 명 정도임이 확인된다.

구사대 인력이 그 임무수행 과정에서 특별한 활약을 하거나 기여 또는 희생을 한 경우, 또는 사기진작이나 회유가 필요한 경우, 현대차 측은 ① 정규직 전환, ② 보상과 포상, ③ 법적문제 해결을 위한 사측의 전면적 지원이라는 카드를 사용하여 관리해온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촉탁·계약직 인력이 구사대 임무수행 중 크게 다치거나 특별한 활약, 중요한 기여를 한 경우 사측은 해당 인력에게 ‘정규직 전환’이라는 보상을 부여함으로써 구사대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충성도를 강화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

나. 누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 운영 및 지휘·명령 체계

현대차 울산공장의 총무실[현재는 울산비즈니스지원실]의 지휘를 받는 보안운영팀은 현장직을 수행하면서도 상황실에서 그룹장에게 지시를 내리는 ‘라인장’을 통해 현장 경비대를 지휘·통솔하게 된다. 라인장 이하에는 6명의 그룹장[속칭 ‘현장반장’]이 자리잡고 있는데, 평시의 경우

6개의 그룹을 각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업무를 수행한다. 직급체계는 군부대의 직급체계와 매우 닮아있다.

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구사대 상시 운영 현황

(평상시) 구사대에 주로 차출되는 보안운영팀의 현장직 직원들은 평소 사업장 내 순찰업무, 차량검색 업무, 산업보안 역할을 맡게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사업장으로 납품되는 물건을 검문하게 되며, 특별히 본관 앞으로 배치된 보안운영팀은 본관에 납품되는 물건이 없기 때문에 고위직 관리자들이 방문할 경우 그들의 동선을 파악하여 각 공장 내지 대기인력에게 소위 봉화대 역할을 하게 된다.

(사찰) 현대차 공장 인근에서 출퇴근 선전전(이른바 출투)과 약식 집회 등에서의 감시·사찰은 그들에게 일상이다. 또한 노동조합 집행부와 주요 활동가에 대한 사찰과 감시는 매우 체계적이었고, 일상적이었다. 각 구사대의 '내부조' 마다 차량이 수 대씩 배정되었으며, 감시 대상이 화장실에 가는 것, 화장실에 가서 어떤 행위를 하는지에 대해서까지도 매우 상세하게 일거수일투족이 어딘가에 보고되었다. 그들의 집 앞에 찾아가 지속적인 감시 사찰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노동자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관찰하는 방법 역시 고효율, 저비용의 방법으로 진화해왔다. 현재 공장 여러 곳을 비추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특히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해고자 복직투쟁위의 사무실을 24시간 비추는 CCTV도 존재하며, 문화제 등을 하는 경우, 공장 주변 아파트 옥상에 올라 그들을 촬영한다.

라. 상황 발생 시 노동조합의 천막 설치 방해, 물리적 충돌 등

평시 보안 업무를 하던 보안운영팀은 구사대로 차출될 경우 연보라색의 평시 근무복과 구두를 안전화와 보안운영팀 관리자 복장으로 환복한다. 이는 관리자와 보안운영 요원들을 확인할 수 없게 하고, 사무직까지 차출하는 공장 특성상 전문 구사대의 인원이 많아보이도록 하고, 구사대 차출로 인한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구사대 차출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보안운영팀은 본 업무 인원을 약 30명 정도로 최소화시키고, 그 외 모든 인원들은 상황대기 상태가 되는데 경과에 따라서는 약 3일에 하루 정도만 귀가할 수 있을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현대차는 천막 설치에 매우 민감한 모습을 보인다. 실제로 2025년 3월 13일 이수기업 천막탈취 사태뿐만 아니라 2025년 4월 18일에도 **"천막 설치를 무조건적으로 막고자 했던 모습이 확인"** 된다.

군경 출신 또는 운동선수 출신의 구사대를 이용하여 행해지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물리적 폭력행사이다. 사측은 구사대에 '폭력을 행사하라.' 고 지시하지 않는다. 그저 '확실하게 해라.' 라고만 하면 현대차에 충성을 보이고자 하는 이들에 의해 사측이 원하는 그림이 그려진다. 몸싸움은 상부의 지시가 없는 한 기한 없이 지속된다.

마. 구사대에 대한 법적·경제적 조력

경찰조사에서 현대차의 고소·고발, 경찰의 인지수사로 인해 노조원들은 처벌되지만, 구사대들의 경우 사측과 경찰의 관계와 구사대의 일관된 진술과 현대차 법무팀의 조력을 받아 사측의 법적·경제적 피해는 매우 경미해지고, 법무팀이 지시해준대로 '회사가 지시한 적 없고, 제 개인의 일탈이며, 저를 처벌하면 된다.' 고 진술한 경우, 수백만 원 정도의 벌금은 현대차가 직접 지불해준다. 2010년대 벌금을 받은 구사대들은 노동조합을 열심히 탄압했다는 포상을 받는 것처럼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되기도 하였고, 크게 다칠수록 더 두꺼운 돈봉투가 지급되기도 하였었다.

3. 구사대 동원 노무관리의 법적·윤리적 문제점

가. 형사적, 민사적 책임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회방해)

현대차 구사대들은 이 사건 집회장소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집단적으로 집회참가자들을 폭행하고, 집회물품인 천막을 강취하는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하고, 집회 자체를 무산시켰는바, 이는 집시법 제3조 제1, 2항을 위반함.

2) 형법 위반(특수폭행, 특수상해)

현대자동차 측 보안운영팀장 이호준 등 구사대들이 공모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집회참가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것 및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은 형법상 특수폭행죄(제261조, 제260조 제1항) 및 형법 제258조의 2 특수상해죄에 해당함.

3) 민법 위반(손해배상)

현대차 측 보안운영팀장 이호준 등 구사대들이 이 사건 집회 현장에 난입하여 집회참가자들의 집회를 방해하고, 집회참가자들의 신체에 폭력 및 상해를 가하여 집회참가자들에게 손해(천막손괴, 치료비, 위자료 등)를 가했음이 명백하고, 이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해당함. 또한 현대차는 이호준 등 구사대들을 보안운영팀에 채용한 후 이 사건 집회방해업무 등에 종사하게 한 자이고, 따라서 구사대들이 이 사건 집회방해업무 등에 관하여 집회참가자들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명백, 이는 민법상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짐.

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현대차 측이 보안운영팀 직원 채용 시 지원자에게 입사 이후 '구사대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고지하거나 안내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현대차는 보안운영팀 직원을 채용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 아니됨에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던 '구사대 임무' 하게 한 것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제17조 제2항 1호, 제4조 제2,3항).

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 경영 위배

1) 인권 침해 및 노동 존엄성 훼손
- 구사대를 동원한 폭력적인 노무관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유린하는 행위이다
- 구사대를 통한 폭력적 노무관리는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2) 구사대를 통한 폭력적 노무관리의 폐해
- 구사대를 통한 폭력 행사는 노동조합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이다
- 구사대는 노동 탄압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

3) 기업 이미지 손상 및 장기적 경쟁력 저하
- 회사가 구사대를 동원해 노동자를 억압하는 행위는 결국 회사의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고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저하되어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4) 현대자동차의 폭력적 노무관리는 국내·외적으로 강력한 제재와 함께 기업의 가치 평가 하락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현대차가 구사대를 동원한 폭력적 노무 관리를 지속할 경우, EU 공급망 실사법(CSDDD) 위반으로 매출액의 최대 5%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는 물론, 국내 인권환경실사법 위반으로 경영진에 대한 형사처벌(징역형 포함)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법적 리스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5) 소결

구사대를 동원한 폭력적 노무관리는 노동자의 기본권과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반사회적이고 반헌법적인 행위이자,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구조적 리스크 요인이다. 이러한 폭력적 관행은 사측이 노동탄압을 수행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다.

이제는 폭력으로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대신, 지속가능한 윤리적 노무관리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노동자와. 그리고 이는 단지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차원을 넘어, 기업의 내적 질서와 외적 경의 상호 존중과 대화를 기반으로 하는 노사관계는 기업의 장기적 발전과 사회 전반의 신뢰 회복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Ⅳ. 현대차와 이수기업의 고용구조 문제

1.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의 역사

가. 1시기 (2004년~2007년) : 문제의 공론화와 투쟁의 서막

1) 노동부를 통한 불법파견의 공식 인정

2004년, 현대차 아산 사내하청지회와 현대차 비정규직노조(현재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노동부에 집단 진정을 제기하였다. 노동부는 127개 사내하청업체의 9,234개 공정에 대해 불법파견임을 인정하였다.

2) 첫 집단 투쟁과 원청을 향한 교섭 요구

노동부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자, 2006년, 지회는 집단 파업을 통해 사상 처음으로 생산 라인을 중단시켰다. 이때 해고자 복직 등을 담은 기본협약 수준의 합의안이 타결되었으나, 이 시기 현대차는 구사대를 동원하여 감시와 사찰을 자행하고 조합원들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노조를 무력화하려고 했다.

나. 2시기 (2010년~2013년): 사법적 승리, 투쟁의 격화와 회사의 분열 전략

1) 대법원의 불법파견 인정과 회사의 의미 축소 시도

2010년 7월 22일, 대법원은 최병승 조합원의 해고가 부당하며, 현대차의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므로 현대차가 최병승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현대차는 이 판결이 최병승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판결이라며 그 의미를 축소했고,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요구를 거부했다.

2) 투쟁의 격화와 회사의 폭력적 탄압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지회는 다시 조합원수가 급증하여 투쟁 동력을 회복했고 회사는 사내하청 업체를 폐업하고, 관리자들을 동원해 조합원들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러한 탄압은 25일간의 공장 점거 파업, 최병승 조합원과 천의봉 당시 사무국장의 296일간으로 이어졌다. 동시에 울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2010년부터 ‘수요집회’를 통해서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을 요구해왔다. 사측은 수요집회 때마다 구사대를 동원하여 폭력을 자행한다. 이 시기에 조합원들은 “매주 수요일마다 두들겨맞았고 이 정도 폭행에는 조금 무뎌졌다”고 증언한다.(장진형 인터뷰).

다. 3시기 (2014년~현재): 기만적 ‘특별채용’과 투쟁의 교착

1) ‘8.18 합의’를 통한 노조 분열과 고립

현대차는 ‘특별채용’ 카드를 통해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라는 지회의 원칙을 흔들며 내부 분열을 조장했다. 결국 2014년 8월 18일, 지회의 최대 조직인 울산지회가 교섭에서 퇴장한 가운데 아산·전주지회가 사측과 ‘사내하도급 관련 합의서’(8.18 합의)에 서명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합의는 불법파견 소송을 취하하고, 근속을 일부만 인정하는 조건으로 특별채용에 응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사실상 현대차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2) 사법부의 전면적 불법파견 인정과 회사의 기만적 대응

8.18 합의 직후인 2014년 9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사내하청 노동자 1,000여 명에 대해 “모두 현대차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현대차 공장 내 모든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임을 인정한 것으로, 8.18 합의의 명분을 무너뜨리는 판결이었다.

3) 불법파견 문제의 현재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20년 역사는 ‘투쟁 → 사법부의 불법 인정 → 회사의 기만적 특별채용 합의를 통한 노노갈등 유발 → 투쟁 동력 약화’라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2. 이수기업: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내 불법파견 업체

가. 이수기업의 담당 공정과 불법파견 판결

이수기업 노동자들 일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하여, 2024. 5. 30. 선고 2022다224290 판결 등 판결에서 불법파견을 인정받았다. 판결 이유를 요약하면, 이수기업의 ‘수출용 차량 이송 업무’는 생산공장과 선후 공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생산공정의 진행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수기업 소속 노동자들 일부가 피고에게 직접고용되었고,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장기간 이수기업 소속으로 근무하였던 다른 노동자들도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파견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상태이다.

나. 이수기업 해고자들 현황

1) 2003년 확약서와 이에 따른 장기간의 고용승계 관행

과거 현대차의 수출선적 부문 업무를 담당하던 9개 사내하청업체, 약 70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존재하였다. 현대차는 ‘특별채용’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하면서 수출선적 부문도 다수 직영화하였다. 동시에 특별채용에 응하지 않고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남아서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하는 노동자들은 2개 사내하청업체로 모았고, 이수기업이 그 중 하나이다. 이수기업 해고자들을 비롯한 현대차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업체 폐업 시마다 다른 사내하청업체로 고용승

계되어 왔다. 이는 정규직 노동조합과 현대자동차 간에 2003년 체결된 ‘확약서’에 근거한 것이다.

2) 이수기업 해고자들의 불법파견 소송 현황

위와 같은 업체 통폐합의 결과, 이수기업에는 수출선적 부문의 다수의 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모였다. 이들은 현대차를 상대로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는 패소/승소/소송 계류 중으로 다양하다. 특히 해고자들 중 다수를 차지하는 무진기업 출신 노동자들은 무진기업 당시 수행하였던 ‘치장이송’에 대해서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끝내 패소하였다(대법원 2024. 4. 4. 선고 2020다299306 판결). 그러나 수출용 차량을 이송하는 업무는 생산공장과 선후 공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생산공정의 진행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점, 단계만 끊어서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식의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

4. 소결

현대차는 그동안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투쟁을 하는 것을 막고, 자신의 방식대로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폭력적인 방식으로 노동조합을 무력화시켜왔다. 이수기업에 대한 폭력은 사실상 마지막 남은 불법파견 투쟁을 무력화하고 불법파견의 증거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다.

현대차가 이수기업 노동자들을 그동안의 관행과 달리 전원 해고한 것은, 첫째,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인정을 받고 파기환송 재판을 진행 중인 이수기업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당장의 생계에 위협을 가하겠다는 것이고, 둘째, 무진기업 등 이전 협력업체에서의 불법파견은 인정받지 못했으나 이수기업에서 일을 해왔으므로 동일하게 불법파견 승소 가능성이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불법파견의 증거를 없애고 소송 제기를 어렵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법원의 판결조차 무시하는 현대자동차, 이런 현대자동자에 대해 제대로 이행을 강제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무책임함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현대차는 불법파견의 경우 그 공정 자체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사람만 전환시키고 그 공정을 촉탁직으로 전환시켰고, 불법파견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현대차의 불법으로 피해를 본 사건이기 때문에 그 피해가 온전히 보상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특별채용 방식을 통해 근속을 일부만 인정하기도 했다. 이렇게 불법파견 피해에 대한 온전한 회복을 방기한 정부의 책임도 있다. 왜곡된 특별채용, 관행을 깬 1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집단해고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무엇보다 현대자동차가 이수기업 노동자들과 고용승계와 이후의 고용구조에 대해 현대차가 교섭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Ⅴ. 폭력에 공조한 경찰, 파괴된 집회의 권리

3월 13일과 4월 18일, 집단해고를 당한 이수기업 노동자들과 그들에게 연대하는 시민들은 평화롭게 집회를 진행했다. 경찰은 집회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집회를 위협하고 방해하는 행위들을 제지할 책무가 있다. 또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대한 책무도 있다. 그러나 경찰은 폭력을 통제해 집회를 보호하지도 않았고, 폭력에 대비하지도, 폭력을 처벌하지도 않았다. 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폭력을 행사한 구사대에 대한 분노만큼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던 울산경찰청과 울산북부경찰서에도 분노했다. 이들의 행태는 '무능'이 아니라 의도된 방치였으며, 현대자동차 구사대와의 '협력' 또는 '공조'였기 때문이다.

1. 파괴된 평화적 집회의 권리

구사대는 집회를 방해하며 폭력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천막, 피켓 등의 집회 물품을 강탈하고 훼손시키고, 이를 말리는 참가자들에게 위력을 행사하며 저항을 무력하게 했다.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를 보호할 것을 현장에 있는 경찰들에게 요청했지만 바로 옆에서도 못 봤다며 외면했다. 경찰은 폭력을 외면, 방관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폭력을 비호한 가담자였다.

구사대가 천막, 피켓 등을 강탈할 때, 참가자들이 물품을 뺏기지 않으려 구사대의 폭력을 몸으로 버티며 항의할 때 경찰은 폭력을 중단시키지 않았고 오직 채증에만 몰두했다. 그런데 경찰의 채증은 대부분 집회 참가자에게 집중되었다. 경찰은 구사대에 항의하는 참가자들을 나무라거나 진정하라고 말하면서 마치 쌍방 다툼으로 간주하고 서둘러 무마시키려는 듯 행동했다.

경찰은 구사대가 천막을 부수고 빼앗은 뒤 충돌이 극한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개입했다. 집회 참가자와 구사대가 엉켜있는 대오 안으로 진입해 구사대를 밖으로 빠지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몸으로 압박하며 해당 장소에 남아있게 했다. 참가자들이 구사대를 쫓아가 항의하면 이를 가로막아 구사대가 회사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구사대가 회사 앞 선전전을 방해하면 이를 방치하고 집회 참가자만 연행했다. 폭력의 가해자인 구사대는 방치한 채 피해자를 연행한 경찰에 항의하니 방패까지 갖춘 경찰이 몰려와 강제해산 시켰다.

구사대의 폭력은 범죄로서의 폭력일 뿐만 아니라 집회의 권리를 파괴한 폭력이기도 하다. 구사대가 가장 집착했던 천막은, 현재 공장으로 돌아갈 수 없는 해고노동자들이 집회를 이어가기 위한 절실한 '장소'였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집회 권리의 핵심이다. 구사대는 권리의 장소를 없애버리기 위해 천막을 부수고 강탈한 것이다. 집회는 '함께' 모여 '함께' 말할 권리, 연대의 권리이기도 하다. 구사대는 폭력으로 연대자들에게 겁을 주고 협박하여 연대를 지속하지 못하게

하려 했다. 경찰도 천막이 설치되어 사람들이 모이고 투쟁이 지속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구사대와 경찰의 이해관계는 일치했고, 경찰이 보여준 태도는 의도적으로 구사대의 폭력을 옹호하며 집회의 권리를 파괴한 공범이었다.

2. 폭력에 대한 대비와 조치는 없었다

구사대의 폭력은 점점 과감해졌다. 경찰 바로 옆에서 폭력을 행사해도 제지받거나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을 집회 현장에 배치하는 것은 집회를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최 측의 계획대로 집회가 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상해나 재산 피해의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수행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두 번의 집회에서 경찰은 이와 관련한 계획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월 13일 집회에서 구사대의 폭력과 천막 강탈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울산경찰청은 4월 18일 집회에서도 폭력이 반복될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이에 대한 계획과 조치가 있어야 했다. 3월 집회보다 더 많은 구사대는 이미 정문 밖으로 나와 있었고, 집회 참가자들 앞뒤로 늘어서 언제라도 포위할 듯 위협적인 분위기였다. 천막 강탈 이후 집회를 진행하는 내내 구사대는 여전히 집회 무대 차량 뒤편과 참가자들 뒤에 계속 남아있었다. 집회가 끝나자 더욱 바짝 다가와 압박하듯 무리 지어 있었다. 경찰은 폭력을 행사한 구사대를 집회 장소에 그대로 방치했고, 결국 두 번째 폭력 사태가 벌어졌다.

경찰은 범죄행위를 목격하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구사대의 일방적인 폭력행위를 직접 목격했음에도 현장에서 체포하지 않았고, 집회 주최자와 집회 참가자들의 평화적인 집회에 대한 보호 요청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했으며, 폭력행위 가담자들을 수사하지 않았다. 경찰은 폭력이 벌어진 후 현장에서 구체적인 사실과 피해 상황에 대해 단 한 번도 묻지 않았다. 집회 참가자들이 폭력을 행사한 현행범을 체포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항의하면 경찰은 ‘신고하라’는 말만 했다. 현장에는 형사과, 수사과 경찰이 30명 이상 있었고 폭력 상황에서는 채증만 열심히 했지만, 구사대 폭력에 대해 수사는 하지 않았다. 오히려 평화 집회를 열었던 주최 측에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폭력을 막을 기회는 여러 번 있었다. 집회 개최 전부터 구사대가 회사 밖으로 나올 수 없도록 조치했다면, 구사대가 집회 장소 앞뒤로 무리 지어 대기하고 있을 때 경찰이 이들이 집회 장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면, 처음 폭력행위가 발생한 뒤에 이에 대한 제재가 있었다면 폭력이 연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너무 뚜렷한 폭력의 징조를 경찰이 방치함으로써 폭력은 현실이 되었다.

3월 집회에 이어 4월 집회에서 폭력은 반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강도도 높아졌다. 이것이 불처벌이 만든 결과다. 폭력과 집회 방해에 대한 법적 처벌은 불법행위에 대한 합당한 책임이다. 더불

어 경찰의 책무를 확인하고 경찰의 책임 방기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모든 사람의 인권을 지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 책임을 묻지 않으면 폭력과 집회 방해, 인권 침해는 반복되기 마련이다.

3. 20년 이상 이어진 폭력, 경찰과 구사대의 오래된 유착

폭력을 동원해 공장 안과 밖을 철저하게 기업의 지배하에 둘 수 있는 것은 공권력의 묵인과 공조라는 유착 관계가 있기에 가능했다. 현대자동차와 경찰의 폭력의 공모는 2003년부터 확인된다. 노동자들은 현대차는 무법 천치, 치외법권이라고 증언했다. 그렇기에 이 폭력 사태는 현대차의 노동 탄압의 역사, 즉 '구사대'라는 조직된 폭력을 이용한 노동자의 권리 파괴가 20년 이상 이어진 맥락 안에 존재한다.

경찰 앞에서도 개의치 않고 폭력을 행사하고, 때로는 경찰과 함께 작전을 짠 듯이 역할을 나누고, 폭력을 수사하지 않는다는 과거의 증언이 2025년 현재의 증언으로 다시 반복됐다. 15년 전 구사대로 폭력을 행사했던 사람이 지금의 구사대를 지휘하고 있고, 노동자들은 구사대가 폭력을 행사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랫동안 경험적으로 누적했다. 그렇게 현대자동차의 사적 폭력은 공권력에 의해 지속할 수 있었다.

장기간 이어진 폭력으로 현대차 울산공장은 '폭력이 일상이 된 공장'이 되었다. 무뎌진 폭력의 감각과 함께 공권력에 대한 불신으로 노동자들은 폭력으로부터 회복될 수가 없었다. 노동자들에게 공권력과 사법제도는 적어도 현대차 그룹과 관련해서는 신뢰할 수 없는 제도이다. 폭력으로부터 보호는 하지 않으면서 권리를 요구하는 노동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공권력이 현대차와 함께 '폭력의 공장'을 만들었다. 공장의 폭력이 일상이 되고 공장 담을 넘어 연대자/시민에게로 이어진 것은 우리 사회가 기업이 인간의 존엄을 박탈해도 무감해질 수 있다는 경고이다.

4. 소결 : 막을 수 있었던 폭력 반복된 집회 방해, 그 책임은 공권력에 있다

평화적 집회의 권리는 타인과의 연대 속에서 개인의 자주권 행사 능력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권리다. 3월 13일, 4월 18일 두 번의 집회에서 구사대가 빼앗으려 한 것은 집회와 연대의 권리였으며, 구사대가 짓밟으려 한 것은 인간 존엄성이었다. 그리고 경찰은 집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구사대와 같이 움직였다. 구사대가 마음껏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집회 참가자들의 항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보호해 줬으며, 처벌받아야 할 범죄행위를 덮어주었다. 이런 경찰의 행위는 구사대와의 '공조'로 볼 수밖에 없다.

평화적 집회의 권리 실현의 주된 책임은 국가에 있다. 현대차가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파괴한다면 국가는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국가는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집회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고 원활한 진행을 보장해야 했다. 구사대의 권리 파괴와 폭력을 저지하고 처벌해

야 하는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찰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더불어 20년 전부터 이어진 현대차의 폭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폭력이 반복된 이유는 공권력의 협조가 있었고, 그에 대한 개선이 없었기 때문이다. 경찰의 불개입과 불처벌은 폭력을 행사한 자들에게 폭력을 반복해도 괜찮다는 신호가 되었다. 이로 인해 경찰에 대한 불신은 심화되었고, 기업과의 유착을 확신하게 했다. 더 나아가 현대차가 경찰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으며 공권력(국가)보다 기업이 우위에 있음을 사회적으로 각인시켰다. 기업의 폭력(자본권력) 앞에 무력하거나 종속된 공권력(국가)을 민주국가의 공권력이라고 할 수 없다.

Ⅵ. 결론: 현대자동차의 구사대 폭력은 조직적이고 비인도적인 노무관리 전략

1. 현대차에서 지속되어 온 구사대 폭력

2003년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사내하청지회가 설립된 것도 폭력적인 노무관리 때문이었다. 2023년 3월 19일, 월차를 쓰려고 관리자를 찾아간 사내하청 노동자를 하청관리자가 밀쳤고, 넘어진 노동자는 병원에 입원했다. 그런데 하청관리자가 병원까지 찾아가 하청노동자의 아킬레스를 식칼로 그었고 그것에 분노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라인을 세우고 투쟁했다. 그 결과 2003년 3월 28일 현대차 아산 사내하청지회가 설립되었다. 이어서 7월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현대차 비정규직노조가 설립되었고, 2025년 현대차 전주공장 사내하청지회가 설립되었다.

2005년 1월 “현대차 노동자사찰·비정규노조탄압 진상조사단’(단장 조영선 변호사)” 보고서에 의하면, 현대차 아산공장은 순수한 경비 목적의 경비대를 3조3교대로 운영하는 한편 특수한 목적 수행을 위해 경비대D반을 창설하여 아산본부(현대차 아산공장의 정규직노조) 간부와 사내하청지회 활동가들의 움직임과 활동을 실시간으로 사찰했다. 경비D조의 문제가 밝혀지면서 현대차 아산공장은 경비업체를 변경하고 D반을 해체하며 공장장의 사과문을 공지하기도 했다. 그 이후에도 노조활동에 대한 사찰이나 폭력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여전히 경비대와 용역을 동원하여 구사대 역할을 하도록 했다. 2005년 울산과 아산에서 노조가 라인을 점거하고 투쟁할 때 구사대가 투입되었다. 구사대는 파업 이후 수배된 노조 간부들을 납치하여 경찰에 인계하기도 하고, 납치·폭행하여 외딴 곳에 버려두기도 했다. 이런 탄압 때문에 노동조합의 힘이 약화된다.

2010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하청이었던 최병승씨가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판결을 받고, 사내하청 노조가 다시 활성화된다. 8월과 11월의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을 할 때, 회사측은 구사대 400~500명을 동원하여 점거 농성 중인 조합원들에게 무차별 폭력을 행사했고 그 때문에 수십명이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당시 구사대는 관리직과 경비대만이 아니라 상당수의 용역도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에도 2012년부터 296일간 진행된 최병승·천의봉씨의 철탑농성에 연대하고자 했던 2013년 ‘희망버스’ 승객들에게 구사대는 소화기를 뿌리고 폭력을 행사했다. 울산공장에서는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수요집회가 2010년 대법원 판결 이후 지속되었는데, 철탑농성 후 2016년 특별채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현대차 구사대는 열사광장으로 향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가로막고 폭력을 행사해왔다. 이런 폭력 속에서 노동자들은 폭력에 무뎌지기도 했다고 증언한다.

현대자동차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특별채용이 본격화된 후, 구사대 폭력은 잠잠해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여전히 불법파견 쟁점이 남아있는 이수기업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유지하며 투쟁을 하자, 현대차는 노동자들을 집단적으로 해고하고 장기투쟁을 위해 농성장을 차리려는 노동자들을 또다시 폭행한 것이다. 2025년 3월과 4월에 발생한 이 폭력은 현대자동차가 여전히 구사대를 동원하는 폭력적인 방식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 폭력은 공공의 공간인 현대차 정문 앞 인도에서 벌어진 폭력으로서, 집회신고가 되어있는 평화로운 공간에 구사대가 난입하여 발생한 것이다. 연대하러 온 여성들의 머리채를 잡고 폭력을 가하는 등 여성에 대한 강도 높은 폭력도 두드러졌다. 이는 현대차의 기획된 폭력으로 이수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고립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 우발적 사건이 아닌 조직적이고 폭력적인 노무관리전략

현대자동차는 2022년부터 연속 3년간 자동차 판매량 세계 3위를 기록한 글로벌 기업이다. 그런데 이런 기업에서 구사대를 동원하여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현대자동차의 구사대 폭력은 그 역사에서 보았듯이 우연적이고 돌발적인 일이거나 한 두 사람의 실수가 아니다. 이것은 폭력으로 비정규직의 투쟁을 관리하려는 노무관리 전략의 일부이다. 게다가 그것은 정규직노조에는 작동하지 않고 비정규직 노조에만 작동하는 선택적인 전략이다.

‘구사대 폭력’은 현대차 노조탄압의 한 부분이다. 현대차는 사내하청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와 해고, 개인들에 대한 노조 탈퇴압력,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공장 출입금지, 투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자행했고, 구사대 폭력은 그런 탄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압력수단이었다. 현대자동차 공장 안에서 벌어진 이 모든 부당노동행위들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면서 결국 노동자들에 대한 구사대 폭력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은 노동자 분할전략이기도 했다.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조는 규모도 크고 투쟁의 파괴력도 높다. 현대차는 정규직과 사내하청을 차별함으로써 정규직의 우월감을 유지하고, 정규직-비정규직이 단결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현대차 안에서 벌어진 폭력행위에 대해 현대차의 구성원들이 모두 분노해야 하지만, 정규직들이 이런 사측의 폭력행위를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여기게 된 것도 이런 분할전략의 결과물이다.

3.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고, 지속될 수 없는 노무관리

폭력은 피해자들의 인격을 훼손하고 깊은 트라우마를 남긴다. 현대차 불법파견의 피해자인 노동자들이, 그 불법을 시정하고 피해를 회복하라는 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당했다. 이런 폭력 때문에 약해진 노동조합은 불법의 책임자인 현대차가 주도하는 ‘특별채용’이라는 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여 자존심을 지키고자 투쟁한 이들은 폭력의 집중적인 희생자가 된다. 이런 폭력 때문에 투쟁이 힘을 갖지 못하게 되면 노동자들은 296일간의 철탑농성 등 극한투쟁을 선택하게 되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하는 사측에 맞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한다. 2005년 현대차의 탄압에 항의하여 목숨을 끊은 울산공장 류기혁 열사와 2013년 회사의 손배·가압류에 항의하여 목숨을 끊은 아산공장 박종식열사 등 아픈 죽음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런 폭력적인 노무관리는 당연히 위법이며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만이 아니라 이런 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이들도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 또한 이런 폭력으로 노조활동을 방해한 부당노동행위도 처벌되어야 한다. 현대차 정문 앞에서 진행하는 집회를 허가받

지 않고 촬영하고 선전전을 촬영하고 감시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명백한 위법이다. 그런데 위법한 행위라는 점만 문제인 것은 아니다. 유럽의 공급망실사제도가 202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발효된다. 구사대를 이용하여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공급망 내의 인권침해이며, 이는 매출액의 최대 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행위이다. 전 세계적으로 인권경영의 중요성이 논의되는 지금, 현대차의 이런 경영전략, 노무관리 전략은 기업에 대한 국제적 이미지를 훼손하고 기업 가치와 평가를 하락시킬 것이다.

법적인 문제 이전에 노동자들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지 않고 노조할 권리를 부정하는 기업이 과연 존재가치가 있는가. 2024년 12월 3일, 시민들은 윤석열의 계엄을 막았고 윤석열은 파면되었다.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물리력으로 침해하려는 행위를 시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 게다가 현대차는 4월 18일, 이수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려고 찾아간 연대시민들에게도 심각한 수준의 폭력을 행사했다. 이 사건은 시민사회에서도 결코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현대차가 이런 방식의 노무관리전략을 지속한다면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Ⅶ. 진상조사단의 요구

진상조사단은 현대차 사내하청 이수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현대차 구사대의 폭력 사건을 조사하면서, 현대차만이 아니라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책임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진상조사단은 현대자동차와 고용노동부, 경찰, 그리고 현대자동차지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현대자동차에 요구한다.

노동조합을 존중하지 않는 기업, 인권을 지키지 않는 기업은 존재 가치가 없다. 현대자동차는 이번 폭력사태의 원인이 된 이수기업 해고노동자 고용승계와 직접고용에 나서야 하며,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폭력에 가담한 이들을 징계처분 해야 한다. 이번 폭력사태에 대한 제대로 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진상조사단을 비롯하여 시민사회단체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 현대차는 관련 대법원판결(대법원 2022다224290판결, 대법원 2022다217728 판결)에 따라 이수기업 해고자들을 즉각 직접 고용할 것
○ 2003. 8. 11.자 확약서에 따라 이수기업 해고자들을 근로조건 저하없이 즉각 고용승계 할 것
○ 이 사건 폭력사태에 대한 대표이사의 사과 및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
○ 이 사건 폭력사태 책임자들을 즉각 해고하고, 폭력행위 가담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단행할 것
○ 보안운영팀의 구사대 운영을 즉각 중지할 것
○ 현대차는 노조에게 보안운영팀의 운영실태를 보고할 것, 구사대 운영 금지 및 위반시 회당 10억의 위약벌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
○ 이 사건 폭력사태 피해자들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것

<2> 고용노동부에 요구한다.

현대차의 구사대 운용은 2025년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다. 2004년 <현대자동차 노동자 사찰·비정규직 노조탄압 진상조사보고서>와 2011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탈퇴 강요·인권침해 진상조사보고서>에서도 밝혀진 것처럼 현대자동차의 구사대 운용과 폭력행위는 오랫동안 지속된 것이다. 이러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막지 못한 고용노동부의 책임도 있다. 진상조사단은 고용노동부에 다음의 내용을 요구한다.

○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련 대법원판결(대법원 2022다224290판결, 대법원 2022다217728 판결)에 따라 즉각 현대차에게 이수기업 해고자들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명령할 것

○ 현대차 3개 공장의 구사대 운용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할 것

〈3〉 경찰에 요구한다.

집회를 담당하는 법집행공무원은 주최자와 참여자의 기본권 행사를 존중하고 보장해야 하며, 평화적 집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 그러나 울산지방경찰청과 울산북부경찰서는 이수기업 해고노동자들의 집회에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게다가 권리를 침해받고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을 오히려 위법행위로 수사하고 있다. 폭력을 행사한 현대자동차 보안팀에 대한 수사가 우선이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보안팀과 경찰의 유착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어야 한다. 국가가 경찰의 불법(집회방해와 직무유기)에 대해 조사해야 하며 그래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우리 조사단은 경찰에 다음과 같은 조치가 빠르게 이뤄질 것을 요구한다.

○ 현대차 구사대의 폭력행위를 방지하지 못하고, 평화집회 보호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한 경찰청장의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 당시 폭력을 방치한 울산경찰청장등 책임자와 관련자 조사 및 조사결과 공개
○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폭력사태 관련 책임자들을 즉각 파면할 것
○ 이 사건 폭력사태 시 현장에 출동한 경력들을 징계할 것
○ 이 사건 폭력사태에 가담한 구사대 및 지시자들에 대한 강제수사(구속수사 및 압수수색 포함)를 포함하여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것
○ 이수기업 노동자들과 당시 연행자들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것

〈4〉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에 대한 요구

정규직-비정규직을 막론하고 노동자들이 일하는 공간에서,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지나는 공공의 공간에서 현대차의 사적 폭력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개입하고 문제제기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 이에 진상조사단은 현대자동차지부에 요구한다.

○ 현대차에 대한 요구가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현대차로부터 노조에게 보안운영팀의 운영실태를 보고하게 하고, 구사대 운영 금지 및 위반시 회당 10억의 위약벌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

증언대회

안미숙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비정규직으로 20년 넘게 일해 온 이수기업 해고자 안미숙입니다. 저는 2002년부터 현대차 사내하청 경리로 근무했고 2017년부터는 수출선적부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동안 하청업체는 여섯번이나 바뀌었고 마지막 업체인 이수기업에서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현재 저는 불법파견 소송의 대법원 계류자입니다. 같은 부서의 창조기업은 두 차례나 불파소송에서 승소했고, 이수기업 역시 올해 두 번이나 불파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현대차는 또다시 책임을 회피하며, 우리 해고노동자들을 고용승계가 아닌 해고의 길로 내몰았습니다. 지난 4월, 대부분의 이수기업 해고자들은 무진과 민수라는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고,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때 현대차 노동조합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1차업체로 통합이 된다.“, “7월까지 고용이 승계된다.“ 수차례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돌아온 것은 해고 통보였습니다.

현대차사측은 말 바꾸기를 밥 먹듯 하고, 20년을 일한 노동자를 아무렇지도 않게 내쳤습니다. 우리는 외칩니다. 2003년 정규직 노사가 협의한 ’사내하청 고용승계 원칙’을 지켜라! 우리도 당당한 노동자다!

동지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노동조합 활동을 하며 현대차의 구사대 폭력을 수없이 목격했고,저 스스로도 갈비뼈 두 대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은 적이 있습니다.

2024년 3월 13일, 4월 18일 저희는 합법적으로 집회를 신고한 장소에서 천막을 설치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수백 명의 구사대가 몰려와 저희 해고노동자들과 연대 조합원, 시민들까지 무자비하게 밀어붙이고 천막을 찢고 강탈해 갔습니다.

강탈한 천막을 용달차로 실어 나르거나, 현대차 담장 너머로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은 불과 2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4월 18일에는 다수의 부상자와 연행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경찰은 지켜만 봤습니다. 여성의 머리채가 잡혀도, 시민의 팔이 꺾여도, “살려달라, 도와달라“는 외침이 있어도 경찰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나타나 노동자들에게만 ‘그만하라’ 라며 중재랍시고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어처구니없게도 우리는 ’집회지 이탈’이라는 혐의로 조사받고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천막을 빼앗기고도 항의한 우리가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동지 여러분, 현대차의 구사대 폭력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경찰이 현대차 편에 서 있는 것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이 부당한 현실은 결코 정상이어선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날의 영상을 보고 말했습니다. “2024년에 아직도 저런 일이 있냐“고. “세상의 이런 일이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냐“고. 우리는 외칩니다. 폭력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노동자를 쓰다 버리지 않도록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증언대회

윤혜민

반갑습니다.
저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이수기업의 명예 조합원이자, 지난 4월 18일 현장에서 1차, 2차, 3차에 걸쳐 구사대의 집단 폭행을 당한 피해자 윤혜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현대차 자본의 반노동적, 반인권적 폭력에 맞서 진실을 알리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차 자본의 악랄함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주요 인물들을 특정하여 각 공장 앞에 얼굴을 공개하는 대자보를 붙이고, 24시간 가동되는 CCTV를 이용한 지속적인 사찰과 감시, 그리고 마침내 4월 18일에는 구사대를 대동해 조직적으로 폭력을 자행하기까지 현대차 자본에게는 이 땅 그 어디도 '법의 지배'가 닿지 않는 치외법권, 무법지대입니다.

4월 18일, 그날은 노동자 시민에게 가장 경건하고 소중한 시간인 '민중의례'가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약 500명에 달하는 구사대는 민중의례를 진행 중이던 시민 대오를 향해 조직적으로 돌진하며 폭력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1차 폭행은 순식간이었습니다. 대오 중간에 서 있던 저는 그들의 물리력에 의해 그대로 휩쓸려갔고, 수많은 남성 구사대 사이에 끼인 채 팔을 낚아채여 꺾이고,몸이 밀려다녔습니다. 저는 체구가 작고 힘이 약한 시스여성입니다. 그 상황에서 저항할 수 있는 힘도, 피할 공간도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제 팔을 세게 잡아 비틀어도, 고통에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연달아 연대시민과 저를 향한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2차 폭행에서는 목이 눌리고, 화단에 쓰러져 있는 저에게 또 다른 구사대가 폭력을 자행했습니다. 3차 폭행에서는 더욱 잔혹했습니다. 쓰러진 여성 조합원을 보호하려 했던 연대 시민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이들을 밀쳐 넘어뜨리고, 심지어 사람을 물건처럼 다루며 발로 밀고, 들어서 던지고,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에서, 법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도대체 언제부터 현대차 자본에게는 이런 폭력이 허용되었습니까? 언제부터 이들의 손이 닿는 곳마다 법도, 상식도, 인권도 사라지는 치외법권이 되었습니까? 그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부당해고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들과 연대하고자 모인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함께 싸우겠다는 의지 하나로 모였을 뿐인데,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구사대의 주먹과 폭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대의 끈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폭행으로 사람이 실려 나가고, 구급차가 오가던 그 참혹한 현장 속에서도 사람들은 함께 싸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도 묻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까? 왜 우리는 맞아 쓰러지고도 연대를 외쳐야 했습니까? 왜 현대차 자본에게는 노동자를 향한 폭력이 아무런 제재 없이 반복되는 것입니까? 누가 이들을 막을 수 있습니까? 누가 이 나라에 '법'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도 묻습니다. 왜 우리가 부당한 폭력의 대상이 되었는지, 그 누구도 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침묵만이 돌아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외칠 것입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것이고, 쓰러져도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폭력으로 우리를 꺾을 수 없습니다.
정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연대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차의 구사대 폭력은 조직적 범죄행위다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 보고회

발행: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
발행일: 2025년 7월 23일